|  |  |  |
| --- | --- | --- |
| **개인투자자가 기업지분 인수 후, 기존의 잉여금으로 무상 증자한**  **경우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23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투자자가 기업지분을 인수한 후, 기업의 기존 잉여금으로 무상 증자한 경우, 관련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1명 또는 여러 명의 개인투자자가 지분 인수방식으로 피인수기업의 지분100%를 취득하는 경우, 지분 인수 전에 피인수기업의 기존 장부금액 중에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잔여 잉여금 누적액에 대해 무상증자 하지 않으며, 지분거래 시에 이를 지분양도가격에 일률적으로 산입처리하고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지분 인수 후, 기업이 기존 장부금액 중의 잔여 잉여금 누적액을 개인투자자(신(新) 주주, 이하 동일)에게 무상증자할 경우, 유관 개인소득세 문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  (1) 신주주가 순자산가격보다 높게 지분을 인수하고 기업의 기존 잉여금 누적액을 지분거래가격에 모두 산입한 경우, 신주주가 취득한 잔여 잉여금 누적액을 무상증자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신주주가 순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고 기업의 기존 잉여금 누적액 중, 지분인수가격에서 원 주식자본을 차감한 차액부분을 이미 지분거래가격에 산입한 경우, 신주주가 취득한 잔여 잉여금 누적액 무상증자 부분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지분인수가격이 원 소유자 권익보다 낮은 차액부분을 지분거래가격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주주가 취득한 잔여 잉여금 누적액 무상증자 부분에 대해 “이자, 주식배당금 소득액”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한다.  신주주가 순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지분을 인수한 후 무상증자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한다. 우선 과세대상의 잔여 잉여금 누적액 부분을 무상증자한 후에 다시 면세의 잔여 잉여금 누적액 부분을 증자한다.  2. 신주주가 소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원가치는 그 인수기업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대가, 상관세금 및 비용이다.  3. 기업에 지분거래 및 무상증자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15일 내에, 주주 및 지분 변화 상황, 지분거래 전 원 장부가액에 기재한 잔여 잉여금 누적액 , 무상증자액수 및 세액인출납부 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본 공고는 발표한 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미처리한 세수관련사항은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5월 7일 |  | **关于个人投资者收购企业股权后将原盈余**  **积累转增股本个人所得税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23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及有关规定，对个人投资者收购企业股权后，将企业原有盈余积累转增股本有关个人所得税问题公告如下：  　　一、1名或多名个人投资者以股权收购方式取得被收购企业100%股权，股权收购前，被收购企业原账面金额中的“资本公积、盈余公积、未分配利润”等盈余积累未转增股本，而在股权交易时将其一并计入股权转让价格并履行了所得税纳税义务。股权收购后，企业将原账面金额中的盈余积累向个人投资者（新股东,下同）转增股本，有关个人所得税问题区分以下情形处理：  　　（一）新股东以不低于净资产价格收购股权的，企业原盈余积累已全部计入股权交易价格，新股东取得盈余积累转增股本的部分，不征收个人所得税。  　　（二）新股东以低于净资产价格收购股权的，企业原盈余积累中，对于股权收购价格减去原股本的差额部分已经计入股权交易价格，新股东取得盈余积累转增股本的部分，不征收个人所得税;对于股权收购价格低于原所有者权益的差额部分未计入股权交易价格，新股东取得盈余积累转增股本的部分，应按照“利息、股息、红利所得”项目征收个人所得税。  　　新股东以低于净资产价格收购企业股权后转增股本，应按照下列顺序进行,即:先转增应税的盈余积累部分，然后再转增免税的盈余积累部分。  　　二、新股东将所持股权转让时，其财产原值为其收购企业股权实际支付的对价及相关税费。  　　三、企业发生股权交易及转增股本等事项后，应在次月15日内，将股东及其股权变化情况、股权交易前原账面记载的盈余积累数额、转增股本数额及扣缴税款情况报告主管税务机关。  四、本公告自发布后30日起施行。此前尚未处理的涉税事项按本公告执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3年5月7日 |